

의안번호	2205854
의 퇴 인	나경원 의원
회 답 일	2025. 3. 10.
추 계 번호	24A5409

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, 중소기업 탄소중립 관련 실태조사 등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6억 4,600만원, 2031년 3억 7,6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1억 5,000만원(연평균 4억 3,0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
 - 이에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5조)	270	—	—	—	—	270	54
실태조사(안 제6조)	368	368	368	368	368	1,840	368
심의·조정(안 제7조)	8	8	8	8	8	40	8
합 계	646	376	376	376	376	2,150	430

주: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2	안 제6조(실태조사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촉진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,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등에 관한 실태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(제1항)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탄소중립에 관한 통계를 작성·관리할 수 있음(제3항)	
3	안 제7조(심의·조정)	○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·조정을 거쳐야 함 － 1.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, 변경에 관한 사항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－ 2.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제8조제6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－ 3. 제9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촉진센터의 위임·위탁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위임·위탁변경에 관한 사항 － 4. 제10조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－ 5.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－ 6. 그 밖에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에 관하여 심의·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	의무규정
4	안 제8조(중소기업 탄소중립 전담기관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담기관(이하 “전담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음(제1항)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(제3항) ○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정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(제5항) － 1. 중앙행정기관 － 2. 지방자치단체 － 3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－ 4. 그 밖에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	재량규정
5	안 제9조(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센터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기업 탄소중립 촉진센터(이하 “탄소중립 촉진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음. 이 경우 전담기관 중 하나에 위임·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음(제1항)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탄소중립 촉진센터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
6	안 제12조(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시스템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시스템(이하 “지원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할 수 있음	재량규정
7	안 제13조(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의 발급 등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, 감축 계획 등록 및 감축량 인증 등 일련의 과정을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등록부(이하 “감축 등록부”라 한다)를 구축·운영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8	안 제14조(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의 거래 등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증서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, 그 밖에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 거래 플랫폼(이하 “거래 플랫폼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음(제7항)	재량규정
9	안 제15조(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 기본사업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－ 1. 온실가스 감축 진단 및 컨설팅 － 2.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금융·투자 － 3.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과 중견기업, 대기업 간의 협력 － 4. 탄소중립 관련 인식개선 및 교육 － 5. 탄소중립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급 － 6. 그 밖에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	재량규정
10	안 제16조(탄소중립 혁신기술 보급·확산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탄소중립 혁신기술의 보급·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(제2항) － 1. 탄소중립 혁신기술 개발 － 2. 탄소중립 혁신기술 실증·검증 － 3. 탄소중립 혁신기술 이전·거래 － 4. 탄소중립 혁신기술 기반 창업 － 5. 그 밖에 탄소중립 혁신기술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1	안 제17조(국제 탄소 무역규제 대응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제 탄소 무역규제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(제2항) － 1.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·검증·공시 등을 위한 배출 현황분석 － 2. 국제 탄소 무역규제 대응을 위한 기획, 연구, 조사, 평가 － 3. 그 밖에 중소기업의 국제 탄소 무역규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	재량규정
12	안 제18조(자발적 탄소 시장 활성화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－ 1. 대기업, 공공기관, 지방자치단체, 중앙행정기관 등을 통한 인증서의 직·간접 수요 창출 － 2.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 기획, 발굴 등 － 3. 검증기관, 인증기관 등의 역량 강화 － 4. 해외 자발적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－ 5. 그 밖에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	재량규정
13	안 제19조(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 발굴·육성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 발굴·육성을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조(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	○	—
2	안 제6조(실태조사)	○	—
3	안 제7조(심의·조정)	○	—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4	안 제8조(중소기업 탄소중립 전담기관)	X	○ 현재 기술보증기금, 중소기업진흥공단,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은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, 개정안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이므로 추가재정요소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○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
5	안 제9조(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센터)	X	
6	안 제12조(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시스템)	X	
7	안 제13조(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의 발급 등)	X	
8	안 제14조(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의 거래 등)	X	
9	안 제15조(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 기본사업)	X	
10	안 제16조(탄소중립 혁신기술 보급·확산)	X	
11	안 제17조(국제 탄소 무역규제 대응)	X	
12	안 제18조(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)	X	
13	안 제19조(탄소중립 선도중소기업 발굴·육성)	X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과 사업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5조)

- 비용추계 대상은 “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비용”으로 하며, 기본계획 수립 비용은 5년 주기 연구용역비로 함
 -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유사 연구용역 사례인 ‘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’의 연구용역비인 2억 7,000만원을 참조하여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비용을 추계함
 - － 시행계획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수립·시행하므로 추가적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
 - 5년 주기를 고려하여 법 시행 첫해인 2027년에 2억 7,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
- 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2억 7,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
[표 2]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5조)	270	—	—	—	—	270	54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실태조사(안 제6조)

- 비용추계 대상은 “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,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중소기업 탄소중립에 관한 통계 작성·관리에 따른 비용”으로 함
 -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유사 실태조사 사례인 ‘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’의 조사비용인 3억 6,800만원을 참조하여 중소기업 탄소중립 관련 실태조사 비용을 추계함

- 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 탄소중립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18억 4,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
[표 3] 중소기업 탄소중립 관련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실태조사(안 제6조)	368	368	368	368	368	1,840	36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다. 심의·조정(안 제7조)

- 비용추계 대상은 “중소기업 탄소중립 관련 사항의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심의·조정에 따른 회의비용”으로 함
- 개정안은 현행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의 중소기업정책심의회¹⁾를 통해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,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·조정하도록 함
 - －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공무원과 민간위원이 각 15명임
 -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심의회에 탄소중립 전문위원회(15명 이내 위원)를 둘 계획인데, 동 위원회에서 개정안의 사항을 심의할 경우 회의비용이 발생함
 - －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민간위원 수는 과반수인 8명으로 가정하고, 회의수당은 25만원, 연간 회의 개최횟수는 4회로 가정함

- 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 탄소중립 관련 사항을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

- 1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0조의4(중소기업정책심의회) ① 중소기업 보호·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정책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- 1~9. <생략>
-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④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
 2. 중소기업 및 경제·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
-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,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⑥ 제2항 각 호에 따라 심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둔다.
- ⑦ 실무조정회의는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, 실무조정회의 및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심의·조정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4,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
[표 4]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심의·조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심의·조정(안 제7조)	8	8	8	8	8	40	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